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결산	변동성	기업공시서식	선취 판매수수료 삭제	모펀드 운용역 변경	기타 법개정 사항
1	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○	-	○
2	미래에셋 OCIO-DB 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
3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-	○	○
4	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-	-	-	-	○	○
5	미래에셋밸런스 TRF 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○	○
6	미래에셋자산관리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-	○	○
7	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-	○	○
8	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○	○	-	-	-
9	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○	○	○	-	-	○
10	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 AP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○	○	○	-	-	○
11	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○	○	-	-	-
12	미래에셋법인전용 MMF1 호(국공채)	○	○	○	-	-	-
13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○	○	○	-	-	○
14	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○	○	○	-	-	○
15	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 2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○	○	○	-	-	-
16	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○	-	-	-	-	-
17	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 ESG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○	○	○	-	-	○
18	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○	○	-	-	○
19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	○	○	○	-	-	○
20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16 호	○	-	-	-	-	○
21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○	○	○	-	-	-
22	미래에셋국공채 MMF 투자신탁제 H-3 호[국공채]	○	○	○	-	-	-

2. 변경 사항:

- 1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2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3)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4) 선취판매수수료 삭제
- 5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- 6)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5년 01월 24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<투자비용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 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 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2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 표준편차	변경 후 등급 97.5% VaR	변경 전(%) 표준편차	변경 후(%) 97.5% VaR
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 접형)	<u>3</u>	<u>2</u>	<u>12.91</u>	<u>30.13</u>
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<u>3</u>	<u>2</u>	<u>12.96</u>	<u>31.75</u>
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<u>2</u>	<u>1</u>	<u>20.59</u>	<u>52.95</u>
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(국공채)	6	6	<u>0.17</u>	<u>0.04</u>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4.64</u>	<u>7.80</u>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 재간접형)	2	2	<u>16.70</u>	<u>42.74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 (채권혼합)	5	5	<u>3.45</u>	<u>7.72</u>
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2	2	<u>20.06</u>	<u>45.50</u>
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1.01</u>	<u>44.93</u>
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호(주식)	2	2	<u>22.21</u>	<u>41.75</u>
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6.71</u>	<u>38.00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2	2	<u>17.16</u>	<u>36.36</u>
미래에셋국공채MMF투자신탁제H-3호[국공채]	6	6	<u>0.18</u>	<u>0.05</u>

*2024.3.1 시행일 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증권신고서(정정신고서 포함)부터 적용

3)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(8)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<신설>	(8)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[별첨 1]

*2024.3.1 시행일 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증권신고서(정정신고서 포함)부터 적용

[별첨1]

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 허용	
	중도환매시 비용발생	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
X	X	O

4) 선취판매수수료 삭제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<생략></u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[아래 참조1]</u>
제38조(판매수수료)	① 판매회사는 종류A, 종류A-e, 종류AG, <u>종류C-I</u>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종류A 수익증권 : 1000분의 10.0 이내 2. 종류A-e 수익증권 : 1000분의 5.0 이내 3. 종류AG 수익증권 : 1000분의 7.0 이내 <u>4. 종류C-I 수익증권 : 1000분의 0.05 이내</u> ③ 종류A, 종류A-e, 종류AG, <u>종류C-I</u>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① 판매회사는 종류A, 종류A-e, 종류AG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종류A 수익증권 : 1000분의 10.0 이내 2. 종류A-e 수익증권 : 1000분의 5.0 이내 3. 종류AG 수익증권 : 1000분의 7.0 이내 <u><삭제></u> ③ 종류A, 종류A-e, 종류AG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[참조1]

구분	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	판매수수료 부과여부 (제 38 조참조)	환매수수료 부과여부 (제 39 조참조)
종류 C-I	법 제 9 조제 5 항제 1 호 내지 3 호에 따른 전문투자자·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	<u>해당사항 없음</u>	해당사항 없음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 구의구조(2)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	종류 C-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선취판매수수료 : <u>납입금액의 0.005% 이내</u>	종류 C-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선취판매수수료 : -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항. 가. 투 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	
제 2 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종류 C-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판매수수료 부과여부: <u>있음</u>	종류 C-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판매수수료 부과여부: <u>없음</u>

5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신광호</u>	<u>신광호(책임), 김승범(부책임)</u>

6)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14. 나. 과세	(1)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 이 없는 것이 원칙 <중략> <u>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 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 <u>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 × 환급비율*</u> <u>* 환급비율 : (과세대상소득금액 / 국외원천과세대 상소득금액) 단, 환급비율 >1 이면 1, 환급비율 <0 이면 0 으로함.</u>	(1)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 이 없는 것이 원칙 <중략> <u>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사 등)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 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(이자·배당소득)에 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 수 합니다. (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)</u>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김승범 본부장

2) 주요경력

(08년~12년)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

(12년~13년) Franklin Templeton(London) 채권운용

(13년~14년) Ashmore Group 채권운용

(14년~16년)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해외채권운용팀

(16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

2. 운용현황(2024.12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공모 펀드 나열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글로벌 PE&VC 증권투자신탁(주식)	2022-06-17	19,857

3. 운용성과(2024.12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글로벌 PE&VC 증권투자신탁(주식)	-3.19	6.95	17.98	59.76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